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4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정동만·송언석·김종양

김태호 • 이인선 • 강대식

박충권 · 강선영 · 이종배

최형두 · 박성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보고만으로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 사실이나 명령 사실의 공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소비자가 어린이제 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 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 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43조).

법률 제 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제2항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고"를 "공개와 보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 및 조치결과 등의 사항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조치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 또는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	제7조(보고와 검사 등) ①		
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			
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			
조시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			
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			
제품을 수거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 ·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		
고) ① (생 략)	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②		
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			
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u>공표할</u>수있다.

1. ~ 3. (생략)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 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u>보고</u>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세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u>공표하여야 한다</u> .
③・④ (현행과 같음)
세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u>공표하여야 한</u>
<u>다</u>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 및
조치결과 등의 사항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
하고, 조치결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4
<u>공개</u>
와 보고
,
1) 40 7 / 키 레 기 이 () 시 케 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신 설>

2. ~ 25. (생략)

④ (생략)

フト	Ò	1
E	П)

- 3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 또는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2. ~ 25.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